

캠퍼스 내 주류 판매면허취득 관련 법적요건 안내

1. 관련근거 :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판매 신고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식당을 의미**)

↳[식품위생법] 영업소별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의 허가 필요

나.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통령령] 슈퍼마켓, 편의점 및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 소매 등이 해당 (**상점을 의미**)

「조세법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 없이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2. 관련사례 : 2017년 ○○대 사례

- 2017년 봄 대동제 시 ○○세무서에서 불법 면세주류 유통에 대한 방문 조사 진행
- 학생회가 학내 단과대학 등 주점들에 주류 일괄공급을 하고 있었으며, 거래 업체가 학생회로 불법 면세주류를 납품한 것이 확인됨
- 무면허자의 소매업 행위로 간주되어 「조세법 처벌법」에 의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납품업체 역시 조세포탈로 세무조사 진행 및 벌과금 부과
- 다만, 대학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초범이고, 대학측이 국세청의 재발방지 노력 요청에 응한 것을 감안하여 납부 유예처리 되었고, ○○대는 2018년 주점운영을 하지 않음

3. 합법적인 주류판매 방법

- **관할 세무서 및 관할 구청(보건위생과) 문의 결과 : 대학 내 주점에서의 주류 판매 불가**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9조에서 언급되는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는 자기소비를 위한 주류취급 임시허가에 해당하여 축제 시 주점 등이 영리행위 용도로 사용불가

대학 내에서 합법적인 주류판매는 불가능하며, 불법 주류판매 시 '무면허자 주류 판매 행위'(보건위생) 및 '면세 주류 불법유통'(세무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부과된 과태료는 주류를 판매한 단체에서 납부 책임을 져야 함.**

뉴스

정치

인천

스포츠

연예

오피니언

뉴스 인천 인천사회

대학축제의 꽃 '주점' 존폐위기... 학생들 주류판매 '불법'

김경희 기자 2018년 04월 25일(수) 제7면



- 인하대학생 국세청 조사 벌금 날벼락
영업신고후 주류 판매면허 취득해야
사실상 모든 주점 불법... 대학가 논란

인천지역 대학가 축제철이 다가오면서 축제의 꽃이라 불리는 '주점'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인천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대학에서 축제기간 중 학생들 주도로 주점을 운영해 술을 판매해 왔는데, 이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된 학생들이 등장하게 된 탓이다.

24일 지역 내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해 인하대학교는 축제기간 주류회사에서 구입한 술을 팔았다가 주류판매 면허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학생들이 벌금을 냈다. 이 때문에 올해 인하대 측은 축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주점은 아예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 측 결정이 알려지자 인하대 학생들이

자녀의 학습위치를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평가!**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 미리 알 수 있을까?**

2018.4.28(토)-4.29(일) [자세히 보러가기>>](#)

많이 본 기사

- 1 [단독] 남양주 별내동서 크...
- 2 한예슬 '지방중 의료사고'...
- 3 하남 감일지구 2천603가구...
- 4 'PD수첩' 박봄 암페타민 밀...
- 5 [3보] 남양주 크린넷 근로자...
- 6 신천지 예수교회, "이홍천...
- 7 류현진♥배지현, 알콩달콩...
- 8 [6·13 지방선거 화성시장 여...

모인 커뮤니티에는 반발의견이 줄을 이었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근 알게 돼 현재 관련부서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점이 진행돼도 문제는 남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학 내에서 술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영업신고가 돼 있지 않은 무면허자 학생들이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 말고는 불법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주류 판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고, 이후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구청 영업신고시 주류 판매 공간, 즉 건물이 있어야 하는데 대학 축제에서 설치되는 주점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신고를 할 수 없다.

결국, 면허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주점을 불법으로 모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들이 수십여 년간 이어온 주점을 원천 봉쇄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된다. 술을 파는 모든 대학을 단속하지 않는 한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천대의 경우 인하대 논란 이후 진행된 지난해 주점에서 술을 판매했고, 인천대는 올해도 주점을 열어 술을 판매한다는 입장이다.

대학 내 한 관계자는 "제도적인 허점을 개
선하거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대학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를 강제하
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
다.

김경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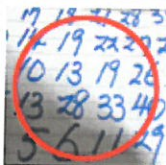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관절통증" 길 열렸다!
최초 新물질발견 "충격"



로또 당첨 확률 높이는
6자리 패턴법 '화제'



홍진영 촬영장 영상
'비키니' 몸매 '화제'



女 승무원 63억 받고
매일 밤마다...충격!



형 몰래'형수'와 불륜
"또 음흉한 생각하지?"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매일경제**[단독] 교육부·국세청 "대학생들 면허없이 술 팔지마라"**

기사입력 2018-05-03 11:11

5월 대학축제의 꽃 `학생 주점` 사라질 위기

올해 5월의 대학교 축제 현장에서는 축제의 꽃이라 불리는 '노상 주점'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불법논란에도 명맥을 유지해왔던 축제주점에 대해 국세청과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3일 각 대학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라는 공문을 통해 대학들에게 "학교축제 기간 동안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문은 교육부가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 공립대, 국립교육대, 국립대, 사립대 등 전국 대학교에 보낸 것이다. 국세청은 "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주점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대학축제의 주점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해도 사실상 면허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주점 등 주류 소매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하고 국세청에 주류를 팔겠다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주류 소매 판매 면허는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축제 주점의 경우 건물이 아닌 노상에 펼쳐지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영업신고 단계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특정 건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이상 모든 대학축제 주점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같은 대학축제 주점 불법논란은 이미 대학가에서 인식되고 있었던 문제다. 앞서 인하대는 축제기간 주류회사에서 구입한 술을 팔았다가 주류판매 면허가 없었던 이유로 학생들이 벌금을 내기도 했다. 결국 술을 파는 모든 대학을 단속하지 않으면서 인하대에만 벌금을 부과한다는 형평성 지적이 나왔고, 결국 국세청이 교육부를 통해 칼을 빼든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학축제 주점의 주류 판매를 금지한 것이 결국 다른 '어른'들의 배만 불러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구장의 '맥주보이'처럼 주점을 운영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야구장에서 생맥주통을 둘러메고 판매하는 맥주보이가 주류의 업소 외 유출 문제로 불법논란에 휩싸였으나 2016년 7월 '업소 외로 술을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합법화됐다. 결국 대학

내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가져와 판매를 하고 안주만 주점에서 팔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주류매출의 이득이 편의점주에게 간다는 것만 달라질뿐 주점 운영은 그대로 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대학축제를 지역축제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축제는 노상에서 술을 팔지만 이는 지자체가 조례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줘서 가능하다.

[조성호 기자]

▶ 뉴스 이상의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

▶ 아나운서가 직접 읽어주는 오늘의 주요 뉴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9&aid=0004144369>